

의안번호	
의 퇴 인	김준혁 의원
회 답 일	2024.10.16.
추 계 번호	24C36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200만원(연평균 3,2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 (안 제9조의3제4항)	81	-	-	81	-	162	32.4

주: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의3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제1항)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효과적인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 중독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 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마약 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항)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가, 마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교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7항)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제2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효과성 평가의 절차·방법 및 제6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의3조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	(제1항)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2023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계획이 수립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당 발표자료에는 추진배경 및 대응경과와 시사점, 세부 추진방안과 향후일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	(제2항·제3항)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해당 교육은 전문교육인력이 수행하도록 함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 법 제9조에 따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외 별도로 ‘전문교육인력’에 의해 ‘마약 중독예방교육’이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할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인력이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제를 통하여 양성하고 있는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와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될지 여부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 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참고로, 2024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유아·초·중·고등학교 대상 출강시키고 있으며, 2024년 9월부터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¹⁾’를 시행하고 있음 ※ 교육건수 (2024년 8월 기준) 유아 2,235건, 초등 9,378건, 중등 2,579건, 고등 1,404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지원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예산 : (’24년) 4,752백만원
		○	(제4항 실태조사)
		×	(제4항 효과성 평가) 개정안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마약중독예방 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효과성 평가의 절차·방법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계가 곤란함
		—	(제5항)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계획과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가능하거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6항)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가, 마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3년 5월에 발표된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로 구성된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이에 교육전문가 등이 추가되더라도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 ‘마약류 예방 재활 강사 인증제’는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통해 학교 등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등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 마약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필수전문 교육과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가 곤란하거나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학생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9조의3제4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학생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3년 주기 실태조사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에 계획 수립 과정의 자문 및 의견 수렴 비용, 작업 수당, 자료 제작 및 홍보·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연구용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일반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연구의 연구용역비를 준용
 - －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추계 1차연도(2026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학생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연구용역비는 2026년과 2029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일반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산출
 -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24년 5월까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의 비용으로 8,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본 추계서에서는 해당 연구용역비의 규모와 유사하게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되는 것으로 하여 5년간 총 1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함

[표 2] 학생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안 제9조의3)	81	—	—	81	—	162	3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후 실제 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